학사학위운영센터운영규정 5-1-56

규정번호 5-1-56
제정일자 2020.6.22
최근개정 2022.9.26
개정차수 2차 개정
관리부서 학사학위운영센터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사학위 운영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모집인원 관리 및 학사운영 지원을 통한 교육의 질 관리를 담당한다.(개정 2021.06.21.)

제3조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학사학위운영센터 운영계획 수립(개정 2021.06.21.)
2. 전공심화과정 모집인원(인가신청) 조정 및 전형(홍보) 관리(개정 2021.06.21.)
3. 전공심화과정 입학 및 졸업사정 지원(개정 2021.06.21.)
4.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운영 점검지원(호신설 2021.06.21.)
5. 전공심화과정 수요자 의견수렴 및 환류실적 관리(개정 2021.06.21.)
6. 전공심화과정 운영진단(자체평가) 및 성과분석(개정 2021.06.21.)
7.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운영(개정 2021.06.21.)
8.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위원회 운영(개정 2021.06.21.)
9.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(개정 2021.06.21.)

제4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통할한다.

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(개정 2022.09.26.)

③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를 담당할 직원과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5조(운영세칙) 센터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에 따르며, 그 외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6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우리 대학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(제4조제2항)